정평동양학연구회

연구실 운영세칙

동양철학연구실

근거 규정 제31조 제1항

본문 7조 · 별표 1

근거 **규정 제31조 제1항** · 본문 **7조** · 별표 **1**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세칙은 정평동양학연구회 규정 제5조·제21조·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연구실의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구실)

① 연구실의 종류는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다.

② 각 연구실의 직무는 별표와 같다.

③ 별표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한다.

제3조(공통 직무)

각 연구실은 분야를 달리하되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공통으로 수행한다.

1. 해당 분야의 연구계획 수립과 연구과제의 발굴·수행 및 성과 관리
2. 연구실 소속 연구원의 연구활동 지원과 공동연구의 조직
3. 춘계·추계 학술대회, 세미나, 콜로키움에서의 연구발표
4. 학술총서·연구보고서·연구자료의 집필과 편집 참여
5. 해당 분야 고전문헌 및 연구자료의 수집·정리·번역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협력
6. 연구회 교육사업 중 해당 분야 교육과정의 내용 자문과 강의 지원
7. 연구실 간 경계에 걸치는 주제의 공동연구 협의
8.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과 연구실적의 보고
9.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연구·사업

제2장 설치와 운영

제4조(설치)

① 연구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적은 계획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(규정 제21조).

1. 연구실의 명칭

2. 설치의 필요성
3. 주요 연구분야
4. 인력구성 — 연구실장 및 연구원
5. 첫 연도 사업계획
6. 소요 예산

② 연구실은 소속 국의 조정을 받으며, 소속 국은 규정 제12조의2 제5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정한다.

제5조(사업계획과 실적보고)

① 연구실은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회장에게 제출한다. 제4조 제1항 제5호의 사업계획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한다.

② 연구실은 매년 연구실적을 회장에게 보고한다(규정 제12조 제2항 제4호).

③ 연구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편성하며, 집행은 규정 제27조에 따른다.

제6조(연구원)

① 연구실에 소속되는 연구원의 위촉은 규정 제8조 제10항에 따른다.

② 연구원은 둘 이상의 연구실에 소속될 수 있다.

제7조(연구실 간 협력)

경계에 걸치는 주제는 관련 연구실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수행한다.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속 국이 조정하며, 둘 이상의 국에 걸치는 경우에는 회장이 조정한다(규정 제10조 제2항 제8호)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구실의 순차 설치)

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연구실은 계획서 심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설치한다. 이 세칙의 별표는 설치 가능한 연구실의 직무를 미리 정한 것으로 본다.

별표 — 연구실별 직무

규정 제23조가 정한 분야를 직무 단위로 풀어 쓴 것이다. 연구실이 신설·통합·폐지되면 이 별표를 개정한다.

1. 동양철학연구실

유교·도교·불교를 비롯한 동아시아 사상과 그 고전문헌을 연구하여 연구회의 학문적 기초를 세우고 다른 연구실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.

1. 유교·도교·불교의 사상사와 주요 개념에 관한 연구
2. 한국철학·중국철학·일본철학의 전개와 상호 영향관계에 관한 비교연구
3. 사서삼경, 노장, 불전 등 동양 고전의 원문 강독과 역주
4. 음양오행론·기론·리기론 등 동양사상의 기초 범주에 관한 이론연구
5. 명리·풍수·점술 등 응용분야의 사상적 근거와 철학적 정합성 검토
6. 동양철학의 현대적 해석과 서양철학·현대사상과의 대화
7. 고전강독 과정의 교재 개발과 강독 프로그램 운영 지원

이 세칙은 연구회 규정에 딸린 문서입니다. 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·개정합니다. 규정 자체의 제정·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합니다(제19조 제2항). 상위 문서는 정평동양학연구회 규정입니다.